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미세먼지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11
----------	-----

2019. 12. 2.(월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-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)

가. 제안사유

○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제2호 개정

○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‘대기오염정보 단계별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기준’ 개정

나. 주요내용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제2호 ‘미세먼지 (PM-2.5)’ 를 ‘초미세먼지(PM-2.5)’ 로 변경
-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발령 및 해제 기준에 연동

3. 검토보고 요지 (이강근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2019. 2월 개정된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과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,
- 상위법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례의 “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” 을 상위법과 연동토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제2호 ‘미세먼지 (PM-2.5)’ 를 ‘초미세먼지(PM-2.5)’ 로 변경함.

조례 현행	조례 개정안
제2조(정의)-----	제2조(정의)-----
1. -----	1. -----
가.-----	가.-----
나. 미세먼지(PM-2.5) : -----	나. <u>초미세먼지</u> (PM-2.5) : -----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미세먼지(PM-2.5)를 초미세먼지 (PM-2.5)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[참고1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

제1조의3(대기오염도 예측·발표 대상 등)

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·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.

1. 미세먼지(PM-10)
2. **초미세먼지(PM-2.5)**
3. 오존(O3)

- 별표1의 미세먼지(PM-2.5)도 초미세먼지(PM-2.5)로 변경해야 하며, 향후 이와 같이 상위법의 용어 및 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조례의 별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별표(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)를 상위법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의 별표7과 연동토록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,
- 또한,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주의보, 경보의 발령해제 기준 PM-2.5의 평균농도가 기존 조례 보다 낮아 도민의 건강보호와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[참고2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별표1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(제4조 관련)			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<개정 2019.2.13>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			
대상 물질	경보 단계	발령기준	해제기준	대상 물질	경보 단계	발령기준	해제기준
미세먼지 (PM-2.5)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90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오염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50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미만인 때	초미세먼지 (PM-2.5)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차 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75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차 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35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180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오염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90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	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차 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150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차 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75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의 변경을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연동하여 기준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,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제2호 개정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'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기준' 개정

## 2. 주요내용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제2호 '미세먼지 (PM-2.5)'를 '초미세먼지(PM-2.5)'로 변경
-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발령 및 해제기준에 연동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미세먼지”를 “초미세먼지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”를 “발령기준 및 해제 기준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별표 7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별표 2”를 “별표”로 한다.

별표 1을 삭제하고, 별표 2를 별표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.구조문대조표

현	행	개	정
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
1.(생략)	1.(생략)	1.(생략)	1.(생략)
가.(생략)	가.(생략)	가.(현행과 같음)	가.(현행과 같음)
나. <u>미세먼지</u> 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하인 먼지	나. <u>미세먼지</u> 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하인 먼지	나. <u>초미세먼지</u> 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하인 먼지	나. <u>초미세먼지</u> 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하인 먼지
제4조(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)	제4조(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)	제4조(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)	제4조(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)
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<u>별표 1</u> 과 같다.	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<u>별표 1</u> 과 같다.	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<u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</u> 에 따른다.	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<u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</u> 에 따른다.
제6조(경보에 따른 조치)	제6조(경보에 따른 조치)	제6조(경보에 따른 조치)	제6조(경보에 따른 조치)
①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<u>별표 2</u>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①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<u>별표 2</u>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①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<u>별표</u>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①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<u>별표</u>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u>[별표1]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(제4조 관련)</u>	<u>[별표1]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(제4조 관련)</u>	<u>삭제</u>	<u>삭제</u>
<u>[별표2]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(제6조 관련)</u>	<u>[별표2]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(제6조 관련)</u>	<u>[별표]</u>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(제6조 관련)	<u>[별표]</u>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(제6조 관련)

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
제1조의3(대기오염도 예측·발표 대상 등)

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·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.

1. 미세먼지(PM-10)
2. 초미세먼지(PM-2.5)
3. 오존(O3)

### 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

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

대상 물질	경보 단계	발령기준	해제기준
미세먼지 (PM-10)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 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00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 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초미세 먼지 (PM-2.5)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 농도가 35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
오존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 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12ppm 이상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12ppm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 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3ppm 이상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12ppm 이상 0.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	중대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 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5ppm 이상인 때	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3ppm 이상 0.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

#### 비고

1.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또는 PM-2.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2.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